

2025년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「홈페이지 제작 지원」

가. 지원목적

-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-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·외 경쟁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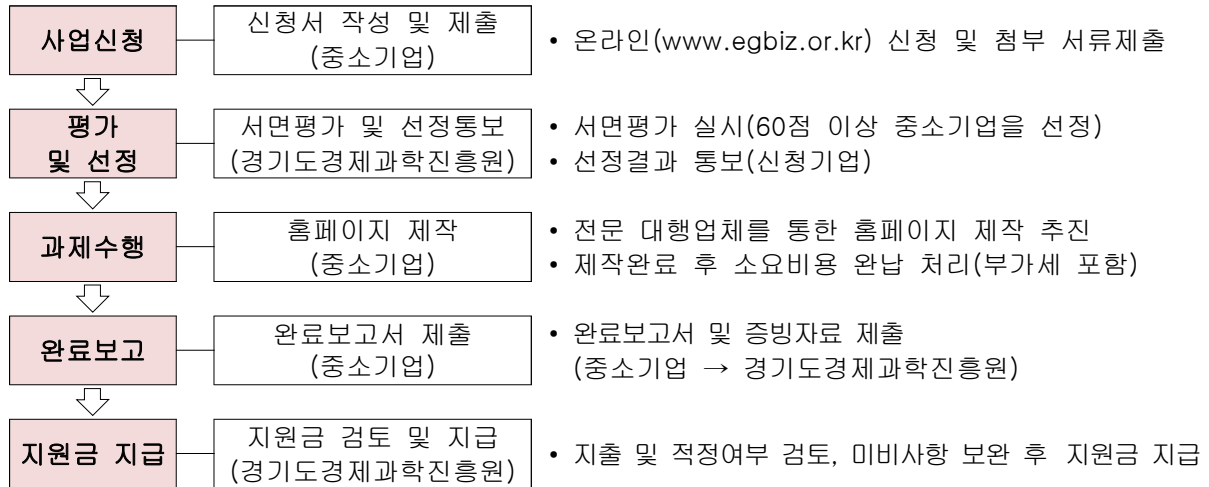
나.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(* 부가세 기업부담)

지원분야	지원비율 및 한도	지원내용
홈페이지 제작 지원	총비용의 60%, 200만원 한도	-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(신규·전면개편, 자체 도메인 쇼핑몰 가능)

-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)
 - 전용 쇼핑몰 제작은 신청기업의 자체 도메인일 경우 가능함
 -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
 - 기존 홈페이지의 단순 수선·유지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
(단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경우 지원 가능)
 - 제작 시 자체 도메인(주소) 구입을 원칙으로 함
 -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은 수선·유지보수로 판단되어 지원 제외될 수 있음
 - 웹호스팅 비용(서버, 도메인, 인터넷 사용료 등) 등 관리 및 운영 비용 지원제외
 -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
 -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
 -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절차



라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지원 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【제12호 서식】 -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(국세청 발급)_2025년도 발급분 - (해당시 제출)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, 팩토리온 발급)_2025년도 발급분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_유효기간 확인 -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, 세무서)_미결산시 23년도 재무제표와 24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국세청 발급)_'23년도, '24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-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-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- (해당시 제출)국내·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- (해당시 제출)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원부
완료 보고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홈페이지 제작 완료보고서 【제13호 서식】 -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【제2호 서식】 -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 _유효기간 확인 - 전자세금계산서 - 온라인 입금증(이체확인증) -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(신청기업명 계좌) <p>※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입금증 계좌가 다른 경우, 입금증 통장사본도 첨부</p>

마. 문의처

권역구분	지 역	담당자
서부권역 (서부권역센터)	김포, 부천	김장식 차장 070-7116-4812
	시흥, 광명, 의왕, 군포, 과천	강정일 대리 070-7116-4816